



[2019. 3. 26.] [29666 , 2019. 3. 26.,]

() 044 - 200 - 5920, 5921

() 044 - 200 - 5965

1

1 () 「 」 .

1 2(2) 「 」 (" ") 2 5 , 7
" "

- 1.
- 2.
- 3.
- 4.
- 5.
6. , , , , ,

[2012. 8. 22.]

2 () 3 1 . < 2012. 8. 22.>
3 2 가 2 .< 2012. 8. 22.>
3 3 가 2 2 .< 2012. 8. 22.>

3 () 4 1 (")
") 1 40 .
. < 2012. 4. 10., 2013. 3. 23., 2014. 9. 24., 2014. 11. 19., 2017. 7. 26.>

1. , , , , , , , , , ,
, , 3
1
2. . (" .
") . (" .
)가 1
3. , . , , , ,
4 (" ")

(開議) ,

2 3 2

.< 2013. 3. 23.>

3 2(. .) (3 3 " ")
(除斥) . < 2015. 12. 31.>

1. (가 .)가
 2.)가
 3. , , () ,
 4. .
 5. 3 , , () ,
- 1 (回避)

[2012. 7. 4.]

3 3() 3 2 1 2

- 1.
- 2.
3. ,
4. 3 2 1
5. 3 2 3 1
(解囑)

[2015. 12. 31.]

4 () 4 2
. < 2013. 3. 23., 2013. 6. 17., 2014. 9. 24.>

1. : 4 1 1 4 , 4 2 9 (.)
2. : 4 1 5 7 9 (.)
3. : 4 1 8

5 () 4 3 (" ")
1 15 . < 2013. 6. 17.>

- 91 . 가
- . 가 , . < 2017. 6. 20.>
1. . 가
 2. . 가
 3. . 가

3 3 6 , 3 2

3 3 .< 2012. 7. 4., 2015. 12. 31.>

6 ()

- 1.
- 2.

7 ()

2

8 ()

5 3

1 .< 2013.

3. 23.>

1 2

.< 2013. 3. 23.>

9 ()

7 3

"

"

.< 2010. 10. 14.>

1. 100 10

2.

가. 51 1

. 「

」 3 1

. 「

」 22 1

. 「

」 6 3 , 7 2 7 2 3

. 「

」 4 1

3

10 (가)

(" ") 9

2

(

)

가

가

.< 2013. 3. 23.,

2017. 6. 20.>

- 1.
- 2.
- 3.
- 4. . .

1 가

.< 2013. 3. 23., 2018. 9. 4.>

1.

2.

3.

(

)

4. 5,000 1

5. 9 7

9 2

가

가

.< 2013. 3. 23., 2017. 6. 20., 2018. 9. 4.>

1. 1 1 3

2. . .

3. .

2 3

가

.<

2013. 3. 23., 2018. 9. 4.>

10 2() 9 3 4 " "

「

」 8

[2014. 9. 24.]

11 () 9 6 " "

.< 2013. 3. 23., 2018. 9. 4.>

1. 15 1 가 (19 1 3) 30 . ()

2. 30 (浚渫) . , (補填)

3. 1 2

12 () 10 1

.< 2013. 6. 17.>

1. (가 ,)

2. 10 1 2 4

3. 1 2

1

10 1 " "

.< 2013. 6. 17.>

1. 1 1

2. 100 5

3. 100 5

4.

5. 「 」 2 4 .

6. 1 ()

7. .

13 () 10 2

.< 2011. 1.

28., 2012. 7. 20., 2013. 3. 23.>

- 1. 5,000 1 가
- 2.
- 3. ()
- 4. 「 가 」 27 가 (31 2
3 가)
- 5. 1 4 「 」 6

.<

2013. 3. 23.>

11 1 2 18 2 5
1 2 가

.< 2013. 3. 23., 2018. 9. 4.>

- 1 10 1
- 3 가 1 2
- .< 2012. 7. 20., 2013. 3. 23., 2013. 6. 17.>

- 1. (鋪裝)
- 2. • (委販場) (• •)
- 3. , ,
- 4. 가 (船架臺) •
- 5. • (「 가 」 31 2 3 가)

5 2. (18 1 2 가)

6. 1 5 5 2

14 () 10 4 " " 18 1
(•) .

10 4 13 1
1 • 2 4 .< 2013. 3. 23.>

13 4 " " "

15 () 10 5 " "
.< 2013. 3. 23.>

- 1.
- 2. 1 가

15 2() 12 1

- 1.
- 2.
- 3. • • •

4. (. .)

5. [2014. 9. 24.]

16 () 12 3 . < 2010. 12. 13., 2013. 3. 23., 2014. 5. 22., 2014. 9. 24., 2015. 6. 1.>

- 1. 「 」 55 1 1 :
- 2. : 「 」 33
- 3. 18 1 가 : 「 」 22 가

17 () 14 . < 2013. 3. 23.>

- 1. .
- 2. ()
- 3.

18 (가) 15 1 가 . < 2013. 3. 23., 2013. 6. 17., 2014. 9. 24., 2015. 12. 31.>

- 1. ()
- 2. (가), (貯油施設), 가
- 3. (專用) (管制) . . . 가

가. (「 」 342 2) (「 」 2 3)

- 4.
- 5. ()
- 6. (港灣親水施設) .
- 7. 1 6 가 가

- 15 1 가 .
- 1. 3
- 2. 가 (價額) 19 .
- 2 2 가
- 2 가 (「 가 가 가)가 가 가 . < 2018. 9. 4.>

2 가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2018. 9. 4.>
 1.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가 가 가 130
 1 1 2 2 , 3
 4 .< 2018. 9. 4.>

19 () 15 4 .< 2011. 1. 17., 2013. 3. 23.,
 2013. 6. 17., 2013. 6. 28., 2014. 5. 22., 2018. 9. 4.>

1. : , 「
2. : 「 가 31 가 . 「 가 31
 가 가 , 「 가 2 1 2
 「 가 19 3 가 .
3. : , , , 「 가
 가 9 가 가(가 가
 가) .
4. : [• (立木)],
 . .
5. : 가. 「 가 31 가 「 가 37
 . , , 「 가
 「 가 64 가 가 , , 가 ,
 . 가 ,
6. : 1 5 (가 가 ,) . ,
7. 가가 : 15 1 가 「 가가 」 37
8. <2014. 4. 8.>
 1 1 5 , .<
 2018. 9. 4.>

1 .< 2018. 9. 4.>
 1. 18 가
 2. 2 가
 3.

20 () 15 4 가 .< 2013. 3. 23., 2018. 9. 4.>

1 19

, 「 」

17 2 18 2

.< 2018. 9. 4.>

1. 가
 2. 31
 3. 27 1 7 가 가
 18 2 가 19

2 .< 2018. 9. 4.>

3 가 18 3 4 .< 2018. 9. 4.>

4

21 () 21 (分區) .< 2013. 3. 23.>

22 () 22 3 " "

1. (土石)
 2. (危害)
 3. (土砂) 가

22 2() 22 2 1 (" 「 」 2 3 가

1 「 」 2 1

[2015. 10. 29.]

22 3() (" ") 1 .

3

가. 「항만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5. 10. 29.]

23 () 24 1 " " 4

24 () 27 1 3 " " . <

2011. 1. 17., 2014. 5. 22.>

- 1. 「항만법」 제39조제2항
- 2. 「항만법」 제24조제4항 가 1
- 3. 「항만법」 제13조제1항

1 1 2

.< 2013. 3. 23.>

1 3 4 9 15

25 () 29 1 " "

.< 2013. 3. 23.>

- 1. (臨港交通施設)
- 2.
- 3.
- 4.
- 5. 「항만법」 제22조제2항
- 6. 1 5

25 2() 29 2 1 2 . .
(" ") 4 2

[2014. 9. 24.]

25 3() 29 3 1 " "

- 1.
- 2.
- 3. (杭打機)
- 4.

[2017. 6. 20.]

25 4() 「항만법」 제60조제1항제2호
29 3 3

- 1. 28 1

2. 「
1

[[2017. 6. 20.](#)]

26 () 30 1 가

() .< [2013. 3. 23., 2015. 10. 29.](#)>

1. .
- 2.
3. . .
4. 30 1
1
() .< [2013. 3. 23.](#)>
30 1 ()

1
.< [2011. 8. 11., 2013. 3. 23.](#)>
30 1

1 .< [2013. 3. 23.](#)>

2 4 ,
가 .
4 (

30 5 " 「 」 23 " .< [2014. 9. 24.](#)>

27 () 30 4 .< [2013. 3. 23., 2014. 9. 24., 2017. 6. 20.](#)>

1. 가
2. , , ,
3. 「 」
- 4.
- 5.
6. 「 」
7. 15 1 가 (「 」 4)
- 8.

가.

9 2

(가)

9. 1

가

8

1

가 . < 2013. 3. 23.>

28 (

)

30 6

. <

< 2014. 9. 24.>

- 1.
- 2.
- 3.
- 4.

30 6

1

. < 2013. 3. 23., 2014. 9. 24.>

29 (

)

31 3

20 2

30 <2015. 8. 3.>

31 <2015. 8. 3.>

32 <2015. 8. 3.>

33 <2015. 8. 3.>

34 <2015. 8. 3.>

35 <2015. 8. 3.>

36 <2015. 8. 3.>

37 <2015. 8. 3.>

5

38 (

)

41 2 6

"

"

. < 2017. 1. 17., 2018. 9. 4.>

- 1. (用地) ,
- 2.
- 3. . . .
- 4. . ,

41 3 "

"

100 10

41 4

.<

2013. 3. 23.>

39 () 42 2 " .
 " .
 1. 100 10
 2. 100 10
 3. 42 3 " 「 」 " 「 」
 42 5 8 " " .
 1.
 2. (換地)

40 () 43 .
 1. .
 2.
 3.
 4.
 5.
 6.
 7. . , 가 「
 8. 「 」 8 2 5
 9.
 10.
 11. 1 3 . 7 10 .

41 () 44 1 " " 5 .
 44 1 " 가 " .
 44 2

.< 2013. 3. 23.>

42 () 46 " " .< 2012. 4. 10., 2013. 6. 17., 2017. 1. 17.>

1.
 2. (.)
 3. ,가 , , . ,
 4. 15 1 가

43 (1) 47 1
(" ")
, . < 2012. 8. 22., 2013. 3. 23., 2013. 6. 17.>

- 1.
- 2. 1 . .
- 3. 47 2 4 가 .< 2012. 8. 22., 2013. 3. 23.>

- 1. ()
- 2. 1
- 3. 2 .< 2013. 3. 23.>
- 1 1 .< 2012. 8. 22., 2013. 3. 23.>
- 4 1 가 「 」
- 4 55 3 가 .< 2012. 8. 22.>
- [2012. 8. 22.]

44 () 48 1 1 (" ")
. < 2014. 9. 24., 2018. 9. 4.>

- 1. 1
- 2.
- 3. 1 , .
- 4. 1 . , ,
- 4 2. .
- 5. 1 . , 가 가
- 6. 46 1
- 7. 1 . , 1
- 8. 1 4 , 4 2 5 7 1 . . 1
- [2013. 6. 17.]

45 () 48 1 " " 44
7 8 . < 2013. 6. 17.>

46 (1) 49 1
1 31 . < 2012. 8. 22., 2013. 3. 23.>
1 1 49 2
. < 2012. 8. 22., 2013. 3. 23.>

[2012. 8. 22.]

47 () 50 가
가

. < 2013. 3. 23.>

1

. < 2012. 8. 22.>

6

48 () 51 53

. < 2013. 3. 23.>

1

< 2013. 3. 23.>

1

. < 2013. 3. 23.>

1

. < 2013. 3.

23.>

49 () 51 2 6 " "

50 () 52 1

. < 2013. 3. 23.>

- 1.
- 2.
- 3.
- 4.
- 5.

52 1

. < 2013. 3. 23.>

1. :

2. :

51 () 53 3 " "

. < 2014. 9. 24.>

- 1.
- 2.
- 3.
- 4.

100 10

(54 55

)

52 () 54 1 (" ")
2
1 , 90 . < 2013. 3. 23.>

- 1.
- 2.
- 3.
- 4.
- 5.

가
가

6. 1 5
1 가 가
. < 2013. 3. 23.>

가 59 1
. < 2013. 3. 23.>

1 . < 2013. 3. 23.>

53 () 54 4 10 " "

- 1. 25,000 1
- 2. (" ") 5,000 1
- 3. 「 」 8 2
- 4.
- 5. (「 」 2 1
, " ") .
- 6.
- 7.

54 () 54 5 가 , 14

. < 2013. 3. 23.>

54 5 14 1 . <

2013. 3. 23.>

- 1.
- 2.
- 3.
- 4.
- 5.

1 5
1
30
. < 2013. 3. 23.>

55 () 54 6 " "

. < 2012. 4. 10., 2012. 7. 20., 2016. 1. 22.>

1.

2.

3. 100 10

4.

5. 「 가 」 2 4 .

6. 「 가 」 29 1 가 「 」 22
가

7. 1

8. 1 6
100 10

56 () 54 7
() . < 2013. 3.

23.>

1.

2.

3. (59 1 가)

4.

5. (再編)

57 () 55 2 4 55
1 .

58 () 55 1
54 4 . < 2013. 3. 23.>

1
. < 2013. 3. 23.>

1.

2. 54

1 가
15 「 」 .
「 2 (" ") .

< 2013. 3. 23.>

3 60

. < 2013. 3. 23.>

30

. < 2013. 3. 23.>

5

3 가

가

3

.< 2013. 3. 23.>

1. 53 6

2. 53 6

59 1 7

1

가

가

6

, 6

3

.< 2013. 3. 23.>

6

.

.< 2013. 3. 23.>

6

3 가 1

(

가

)

3

. 가

가

가

가

. 가

.< 2013. 3. 23.>

1.

가

:

가

10

2.

8

가

: 가

5

<2014. 9. 24.>

6

9

11

.< 2013. 3. 23.>

1

9

가

12

.< 2014. 9. 24.>

59 (

)

57

1

"

"

.< 2012. 4. 10., 2016. 1. 22.>

1.

(

"

"

)

2.

100

10

3.

4. 「

」

·

「

가

가

「

」

가

60 (

)

58

2

.< 2013. 3. 23.>

1.

2.

3.

4.

61 (

)

59

1

4

(

"

"

)

.< 2014. 9. 24.>

1. 「 」
 2. 「 」
 3. 「 」
 4. 「 」 ()
 5. 「 」
 6. 「 」
59 1 6 " "
- .< [2012. 8. 22., 2018. 10. 30.](#)>
1. 「 」
 2. 「 」 「 」 4
 3. 100 50
 4. 「 」 2 12
 5. 3 1
 6. 「 」 5
59 1 7 " " 59 1 1 , 2
4 6 100 20 .< [2014. 9. 24.](#)>
- 62 () 59 2 4 " "
- 가
- 63 () (58 12)
59 3
.< [2013. 3. 23.](#)>
- 63 2() 59 4
(" ") 가
- 1
2 14
2 가
- [[2014. 9. 24.](#)]
- 64 () 60 1 가
(" ")
.< [2012. 7. 20., 2013. 3. 23., 2016. 1. 22., 2018. 10. 23.](#)>
1. 25,000 1
 2. (用地圖)

3.
 4. ()
 5. . .
 6. 「 가 」 27 가 , 「 」 16 가 ,
 「 」 4 가
 7. . . .
 8.
 9. 85 3
 10.
 53 7
 . < 2013. 3. 23.>

65 () 60 1 " "
 . < 2012. 4. 10.>
 1.
 2.
 3. 「 」 2 4 .
 1
 . < 2013. 3. 23.>

66 () 60 2 8 " "
 1.
 2.

67 (.) 60 3
 . . . (. .)
)
 < 2013. 3. 23.>
 1 . . . 20
 . < 2013. 3. 23.>

68 () 60 4
 . < 2013. 3. 23.>

1.
 2. .
 3.
 4.
 5.
 6.

68 2() 60 2 1
 . (" ") " ")
 (" ") .

가

[2014. 9. 24.]

68 3() 60 3 1 (" ")

- 1.
- 2. (" ")
- 3. , , , ,

- 4.
- 5. 가
- 6.

1

60 3 1 4 " " 61 1
60 3 6 " "

- 1. 62 5
- 2. 10 " "

- 1.
- 2.
- 3. 가
60 3 8 가 2
, 가

가 가 가
가 가
60 3 9 , 가

[2014. 9. 24.]

69 () 61 1 . < 2013. 3. 23.>

- 1. ()
- 2. . .
- 3.
- 4.

5. .

6.

61 2

.< 2013. 3. 23.>

70 () 가 61 5

. < 2013. 3. 23.>

1.

2. 가

3.

71 () 62

1

1.

2.

3.

4.

5.

6.

72 () 63 1 " " 15 1

18 1

72 2() 63 2 1 (

" ")

1.

2.

3.

4. 가

5.

6.

1

1. () .

2. (

)

3.

4. 가

5.

6.

7.

[2014. 9. 24.]

[72 2 72 3 <2014. 9. 24.>]

72 3() 64 4 1 (")
") 5 2 . < 2013. 6. 17., 2014. 9. 24.>
64 4 1

.< 2013. 6. 17., 2014. 9. 24.>

1.

2.

3.

4. ()

2

(

)

2

64 5 1 (" ") .< 2013. 6. 17., 2014. 9. 24.>

3

1

2

5

.< 2013. 3. 23.>

[2012. 8. 22.]

[72 2 , 72 3 72 4 <2014. 9. 24.>]

72 4(•) 64 5 1 ")
" 30 . < 2013. 6. 17., 2014. 9. 24.>

1

11

1. 가 1

2. 1

3. 「 」 2 3 1

4. , .

[2012. 8. 22.]

[72 3 <2014. 9. 24.>]

72 5() 가 64 6 1
100 25 .

[2014. 9. 24.]

72 6() 64 7 1 (")
") 75 가 .

2

(開議)

1 3

[2014. 9. 24.]

7

73 () 67 1

- 1.
- 2.
- 3.
- 4.
- 5.
- 6.

7. 1 6

67 2 가 가 .<
2013. 3. 23., 2017. 1. 17.>

- 1.
- 2.
- 3.
- 4.
- 5.
- 6. 1 5

(共同溝)

74 ()

67 3 , < 2013. 3. 23.>

, 가 , 가 가
67 3 , , 가
「 」 22

8

75 () 71 1

, , , . < 2013. 3. 23.,
2013. 6. 17.>

71 1 3 " " 30 4
3 .< 2013. 6. 17., 2014. 9. 24.>

76 () 74 1
 (藏置日)
 . < 2013. 3. 23.>
 74 1 1 ,
 가 20 .

77 () 76 1 2
 (" ") 78
 . < 2013. 3. 23.>
 1 , 가
 2 . <

< 2013. 3. 23.>

- 1.
- 2.
- 3.
4. 1 3

2 , < 2013. 3. 23.>
 「 」 . < 2013. 3. 23.>
 . < 2013. 3. 23.>

78 ()
 . < 2013. 3. 23.>

1. 가
- 2.
3. 가
4. 가
5. 1 4 1 4

79 (가) 77 가
 . < 2013. 3. 23.>

9

79 2() 가 77 2 1
 (換地)

1. 가 가 가
2. 가 , 가

3. 가 가
77 2 1

- 1.
- 2.
- 3.
- 4.

가 77 2 1

2 4

3

2 4

[2014. 9. 24.]

80 ()

78 1

. < 2017. 6. 20.>

- 1.
- 2.
- 3.
- 4. 가 . (勞務者)
- 5.
- 6. 1 5

1

. < 2018. 9. 4.>

78 1 "

"

. < 2018. 9.

4.>

- 1. 「 」
- 2. 「 」
- 3. 「 」
- 4. 「 」

78 2 「

「

」

1 . < 2018. 9. 4.>

81 () 80 4

(91

)

. < 2013. 3.

23., 2015. 10. 29.>

1

- 1.
- 2.
- 3. , 가 가 가

4.

10

82 (가) 83 1 가 10 26 1 . < 2013. 3. 23.>

83 () 84 1 가 . < 2010. 4. 20., 2010. 7. 21.>

1. : 「 」 2 1 2 (가) ,
2. : 가 (「 」 2 1 2)

3. : (切土) · (盛土) · (整地) · (鋪裝)

4. · · : · · · (土石) ,

5. 3 · : 「 」 2 7 , 2 10
2 19 (遊漁)

6.
7. : 1

8. (竹木) 84 2 2 " "

1.
2.
3. 1
4. (植栽)(가 ·)

84 3 가 · · · 30 · ·

. < 2013. 3. 23.>

83 2(가· 가) 85 2 1 가· 가
(" ") 7

1 85 1 가· 가
가 가· 가 가

5
1 2

[2013. 6. 17.]

90 () 91 4 (" ")

- 1.
- 2.
- 3.
- 4. 가
- 5.
- 6. .
- 7.
- 8.
- 9.
- 10.
- 11. 1 10

91 ()

92 1 가 가
. <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2017. 6. 20.,

2018. 9. 4.>

- 1. 2 5 .
- 2. 9 1
- 3. 9 2 . 3 7 가 가
- 4. 9 8 가
- 5. 10 1 , 2 4 , .
- 5 2. 12 1
- 6. 12 2 3
- 7. 12 5
- 8. 13
- 9. 14
- 9 2. 15 1 가 20 1 가
- 10. 16 .
- 11. 21
- 12. 23 .
- 13. 24 1 .
- 14. 26
- 15. 27
- 16. 29 2
- 17. 30 가, . , , ,
- 18. 31 .

- 19. <2015. 8. 3.>
- 20. <2015. 8. 3.>
- 21. <2015. 8. 3.>
- 22. <2015. 8. 3.>
- 23. 61 , (46
2)
- 24. 62 (46 2
)
- 25. 70
- 26. 71 1 3 . ()
- 27. 72
- 28. 73
- 29. 74
- 30. 75
- 31. 76 .
- 32. 77 .
- 33. 80 81
- 34. 82
- 35. 83 가 ()
- 36. 86 ()
- 37. 87 . 가()
- 38. 88
- 39. 93
- 40. 101

92 1

.<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2015. 8. 3., 2018. 9. 4.>

- 1. 1 2 5 , 5 2, 6 9 , 9 2, 10 18 , 25
29 , 31 33 40
- 1 2. 1 30 32 ()
- 2. <2018. 9. 4.>
- 3. 30 ()
- 4. 63 (46 2 ,
)

92 1

.< 2014. 9. 24., 2017. 6. 20.>

- 1. 1 23 24
- 2. 63 ()
- 3. 75 ()
- 4. 77 . (.
)

92 () 92 2 . . .
. < 2013. 3. 23.>

92 2() 3 ()
3) . <
2014. 9. 24., 2016. 12. 30.>

- 1. 20 가 : 2017 1 1
- 1 2. 22 : 2017 1 1
- 1 3. 23 4 : 2017 1 1
- 1 4. 59 : 2014 1 1
- 2. 61 63 , ,
- : 2014 1 1
- 2 2. 63 2 : 2014 9 25
- 2 3. 68 2 : 2014 9 25
- 2 4. 68 3 : 2014 9 25
- 2 5. 72 2 . : 2014 9 25
- 2 6. 72 5 : 2014 9 25
- 3. 76 79 , , 가 : 2014 1 1
- 4. 83 : 2014 1 1
- 5. 90 : 2014 1 1
- 6. 93 6 : 2017 1 1

[2013. 12. 30.]

11

93 () 101 1 6 .
[2011. 4. 4.]

< 21882 ,2009. 12. 14.>

1 () . , 91 1 2 2009 12 31

2 ()

3 () 13 3

18 4

4 () 2009 12 10 2009 12 30

5 ()

6 ()

1 2 " 「 」 2 6 " " 「 」 2 5 " .

83 3 2 1 " 「 」 2 2 " " 「 」 2 2

3 " , 1 2 " " " " .

가

1 " 「 」 2 6 " " 「 」 2 5 " .

10 2 4 " 「 」 2 6 " " 「 」 2 5 " .

2 34 " 「 」 2 6 " " 「 」 2 5 " .

10 6 " 「 」 2 1 " " 「 」 9 " .

2 2 " 「 」 2 6 " " 「 」 2 5 " .

2 2 3 " 「 」 2 6 " " 「 」 2 5 " .

50 1 2 " 「 」 2 2 " " 「 」 2 2

" .

5 1 " 「 」 2 6 " " 「 」 2 5 " .

2 1 1 .

1. 「 」 2 4

41 2 1 2 .

2. 「 」 2 2 3

1 1 1) " 「 」 2 2 3 " " 「 」 2

2 3 " .

25 1 3 " 「 」 2 6 " " 「 」 2 5 " .

17 4 7 " 「 」 13 " " 「 」 59 "

⑩

26 2 3 " 「 」 2 6 3) " " 「 」 2 5 (3) " .

⑪

15 1 55 10 " 「 」 2 6 " " 「 」 2 5 " , 1
" 「 」 42 " " 「 」 41 " .

⑫

2 " 「 」 2 6 " " 「 」 2 5 " .

⑬

43 1 11 " 「 」 2 6 " " 「 」 2 5 " .

⑭

116 2 3 3 " 「 」 2 6 " " 「 」 2 5 " .

⑮

10 22 " 「 」 2 6 " " 「 」 2 5 " .

⑯

7 3 1 " 「 」 2 6 가 " " 「 」 2 5 가 " , 2
" 「 」 14 4 1 " " 「 」 13 4 1 " , 3 " 「
」 14 4 2 " " 「 」 13 4 2 " , 4 " 「
」 14 4 3 " " 「 」 13 4 3 " , " 「 」 2 6 가 "
" 「 」 2 5 가 " .

13 1 1 " 「 」 28 1 " " 「 」 28 "

⑰

1 " 「 」 22 2 " " 「 」 19 2 " .

2 " 「 」 (" ") 19 1 " " 「 」 (" ") 16 1 "

⑱

3 1

1. 「 」 2 2 3

52 4 15 1 가 " 「 」 2 6 " " 「 」 2 5 " .
 ㉕ .
 29 12 36 " 「 」 11 3 " " 「 」 9 2 3 " , 51
 13 " 「 」 3 " " 「 」 2 " .
 ㉖ 가 .
 1 4 " 「 」 2 6 " " 「 」 2 5 " .
 ㉗ .
 2 1 " 「 」 4 " " 「 」 51 " , " 「 」 4 1 " " 「 」 51 3 " .
 7 () 「 」 , 「 가 「 」 , 「 .

< 22127 ,2010. 4. 20.> ()
 1 () 2010 4 23 .
 2 9

10 () ㉘
 ㉙ .
 83 1 5 " 「 」 2 5 " " 「 」 2 6 " .
 ㉚ ㉛
 11

< 22179 ,2010. 6. 1.>

< 22288 ,2010. 7. 21.> ()
 1 () .
 2 () .
 83 1 5 " 「 」 2 6 , 2 9 (入漁)
 2 18 (遊漁)" " 「 」 2 7 , 2 10
 2 19 (遊漁)" .

< 22449 ,2010. 10. 14.> ()

1 () 2010 10 16 .

2 3

4 () ㉕

㉖

9 2 " 「 」 4 1 " " 「

」 22 1 " .

㉗

㉘

5

< 22525 ,2010. 12. 13.> ()

1 () . < >

2 12

13 ()

16 1 " 「 」 50 1 1 " " 「 」 102 1

1 가 " .

14

< 22626 ,2011. 1. 17.> ()

1 () .

2 4

5 () ㉙

㉚

19 1 1 , 2 5 가 " 「 」 10 " " 「

」 31 " .

24 1 2 " 「 」 2 2 " " 「

」 2 4 " .

㉛

6

< 22649 ,2011. 1. 28.> ()

1 () 2011 2 5 .

2 6

7 ()

13 1 5 " 「 」 91 " " 「 」 6 " , "

8

< 22705 ,2011. 3. 9.>

< 22829 ,2011. 4. 4.> ()

1 ()

2 (「 」) 「 」 119 1 4

가

3 (「 」 가) 「

」 27 3

가

4 ()

< 23073 ,2011. 8. 11.> ()

1 () 2011 8 19 .

2 ()

26 3 " (,

「 」 .

)" " ()"

< 23561 ,2012. 1. 26.>

< 23718 ,2012. 4. 10.>()

1 () 2012 4 15 . < >

2 13

14 14 () <81>

<82>

3 2 3 " " " . " .

42 2 " " " . " .

55 5 , 59 4 65 1 3 " " " . " .

<83> <85>

15

< 23915 ,2012. 6. 29.>

< 23928 ,2012. 7. 4.>()

. < >

< 23966 ,2012. 7. 20.>(가)

1 () 2012 7 22 . < >

2 4

5 () ㉔

㉕

13 1 4 " 「 가 」 13 " " 「 가 」 27 " , " 16

" " " , " 3 2 1" " 31 2 3" .

13 4 5 " 「 가 」 3 2 1" " 「 가 」 31

2 3" .

55 6 " 「 가 」 18 1 " " 「 가 」 29 1 " .

64 1 6 " 「 가 」 13 " " 「 가 」 27 " .

㉖ ㉘

6

< 24067 ,2012. 8. 22.>

- 1 () 2012 8 23 .
- 2 () 91 2 . 가
- (9 1)가 91
- 3 1 3 가 .

< 24443 ,2013. 3. 23.>()

- 1 () . < >
- 2 5
- 6 () <132>
- <133> .
- 3 2 " " " " , 1 " ,
- , , , , " " , , ,
- , , , , " .
- 3 2 2 • 3 , 7 , 4 , 8 2 • 3 , 10 1
- , 3 , 4 , 11 3 , 13 1 , 2 •
- 3 , 4 6 , 14 2 , 15 2 , 16 , 17 ,
- 18 1 7 , 19 1 6 , 20 1 , 21 , 25 6 , 26 1 ,
- 2 • 3 , 4 , 27 1 4 , 8 가 , 9 , 2 ,
- 28 2 , 31 2 , 32 1 , 2 , 3 , 33 1 ,
- 2 , 34 2 , 38 3 , 41 3 , 43 1 , 2
- , 2 , 3 • 4 , 46 1 • 2 , 47 1 , 48 1 3 ,
- 50 1 , 2 , 52 1 , 2
- 4 , 54 1 , 2 , 3 , 56 , 58 1 ,
- 2 , 2 , 3 , 4 , 5 , 6
- , 7 • 8 , 9 • , 2 ,
- 10 • 12 , 60 , 63 , 64 1 , 2 , 65 2 ,
- 67 1 • 2 , 68 , 69 1 , 2 , 70
- , 72 2 6 , 74 1 , 75 , 76 1 , 77 1 , 3 ,
- 4 , 4 • 5 , 78 , 5 , 79 , 81 1 , 2 3 ,
- 82 , 85 1 , 3 , 86 1 • 2 , 87 1 • 2 , 88 2 ,
- 3 , 4 6 , 89 1 , 2 , 91 1
- , 2 , 3 • , 92 , 1 1

, 2 , 3 2 , 가 • , 4 17 , 5
 2 5 6 2 " " " " .
 10 2 1 , 18 1 3 , 19 1 6 , 24 2 , 48 4 , 64 1
 , 73 2 6 83 3 " " " " .
 58 6 " " " " .
 64 1 10 " " " " .
 <134> <146>

< 24466 ,2013. 3. 23.>(가)

1 () .

2 ()

88 3 .

< 24626 ,2013. 6. 17.>

1 () . , 4 , 5 , 10 2, 12 3 , 72 2 1 .

2 4 , 72 3 1 , 75 83 2 2013 6 19 .

2 () 13 4 5 2

가 .

3 (가) 42 3 가

< 24638 ,2013. 6. 28.>(가가)

1 () 2013 7 1 . < >

2 15

16 () ㉔

㉕ .

19 1 7 "「 가가 」 17 " 「 가가 」 37 " .

㉖

17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298 ,2014. 4. 8.>

1 ()

2 ()

가

19 1 8

< 25358 ,2014. 5. 22.> ()

1 ()

2014 5 23

2 12

13 () ㉓

㉔

16 1

1. 「 」 55 1 1 :

19 1 5 가 " 「 」 27 4 가

" " 「 」 37 "

24 1 1

1. 「 」 39 2

㉕

13

< 25637 ,2014. 9. 24.>

1 ()

2014 9 25

2 ()

4 2

3 ()

91 2 3

가

가

가 91 1 3

가

< 25751 ,2014. 11. 19.> ()

1 ()

5

2 4

5 () <388>

<389>

3 2 1 " " " " , " " , " " .
1 1 " " " " " "

<390> <418>

< 26302 ,2015. 6. 1.> ()

1 () 2015 6 4 .

2 () ⑤

<51>

16 2 " 「 . 」 " " 「 」 "

<52> <54>

3

< 26473 ,2015. 8. 3.> ()

1 () 2015 8 4 .

2 6

7 ()

30 37 .

91 1 19 22 .

91 2 1 " 6 22 " " 6 18 " .

5 .

8

< 26602 ,2015. 10. 29.>

< 26844 ,2015. 12. 31.> ()

< 26849 ,2015. 12. 31.>

< 26928 ,2016. 1. 22.> ()

1 () 2016 1 25 .

2 3

4 () ⑰

⑳

55 6 " . " " 가" .

59 4 " " " 가" .

64 1 6 " . " " 가 " .

5

< 27472 ,2016. 8. 31.> (가 가)

1 () 2016 9 1 .

2 5

6 6 () <91>

<92>

18 3 "「 가 가 」" "「 가 가 」"

7

< 27550 ,2016. 10. 18.>

< 27751 ,2016. 12. 30.> (가)

1 () 2017 1 1 . < >

2 12

< 27792 ,2017. 1. 17.> ()

1 () 2017 1 28 .
 2 6
 7 () ㉔
 ㉓
 38 1 4 , 42 3 73 2 3 " " " "
 .
 ㉔ ㉓

< 28138 ,2017. 6. 20.>

1 () 2017 6 21 .
 2 ()
 1 25 " 「 」 " " 「 」
 "

< 28211 ,2017. 7. 26.> ()

1 () , 8 .
 2 7
 8 () <323>
 <324>
 3 2 1 " , " " , " , "
 " " "
 1 1 " " "
 "
 <325> <388>

< 29138 ,2018. 9. 4.>

1 () .
 2 (가 가) 가
 18 3 4 .
 3 () 가
 19
 4 () 가
 20 2 .

< 29249 ,2018. 10. 23.> ()

1 () 2018 10 25 .

2 ()

64 1 6 " " " 가 " .

< 29269 ,2018. 10. 30.> ()

1 () 2018 11 1 .

2 9

10 () ④⑧

④⑨

61 2 2 " 「 」 2 1 " " 「

」 4 " .

⑤⑩ <51>

11

< 29666 ,2019. 3. 26.>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26.>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제2조제1항 관련)

1. 무역항

항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침도 남단)의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 35분 24.90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4분 25.66초, 동경 126도 45분 22.44초와 북위 37도 34분 28.47초, 동경 126도 45분 32.32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운하 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인천항	인천광역시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58.13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126도 35분 32.37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침도 남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6.05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지점과 북위 37도 34분 44.05초, 동경 126도 33분 20.58초(세어도 북단)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04.07초, 동경 126도 30분 52.59초(영종도 북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26분 47.11초, 동경 126도 29분 10.60초(영종도 남단) 지점과 북위 37도 21분 41.14초, 동경 126도 26분 26.62초(해녀도)와 북위 37도 18분 56.16초, 동경 126도 28분 49.61초(남장자서), 북위 37도 17분 19.17초, 동경 126도 31분 58.59초(대부도 서북단 타구 봉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송도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이) 끝단에서 오이도 선착장 끝단,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시화호 방조제 및 한화교 내륙쪽 해면은 제외한다.
서울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의 북위 37도 31분 48.90초, 동경 126도 55분 55.33초, 북위 37도 31분 46.94초, 동경 126도 55분 58.45초, 북위 37도 31분 33.49초, 동경 126도 56분 14.90초, 북위 37도 31분 43.76초, 동경 126도 56분 31.39초, 북위 37도 32분 00.88초, 동경 126도 56분 14.5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수면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삼교호는 제외한다.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63초 지점에서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 00분 52.29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 01분 08.28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 01분 16.28초, 동경 126도 25분 54.63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 01분 28.28초, 동경 126도 25분 19.64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 03분 05.27초, 동경 126도 24분 40.64초

태안항	충청남도 태안군	<p>바. 북위 37도 03분 12.27초, 동경 126도 22분 45.65초</p> <p>사. 북위 37도 01분 52.28초, 동경 126도 18분 34.67초</p> <p>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 00분 37.28초, 동경 126도 15분 56.69초</p> <p>자. 만대 북단 북위 36도 58분 43.30초, 동경 126도 18분 16.68초</p> <p>차.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 58분 25.30초, 동경 126도 20분 06.67초</p> <p>방갈리 북측 북위 36도 54분 19.33초, 동경 126도 13분 21.71초의 지점에서 다음 각 북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가. 북위 36도 54분 26.33초, 동경 126도 11분 44.71초</p> <p>나. 북위 36도 53분 50.33초, 동경 126도 10분 48.72초</p> <p>다. 북위 36도 55분 34.32초, 동경 126도 12분 41.71초</p> <p>라. 북위 36도 55분 26.32초, 동경 126도 14분 33.70초</p> <p>마. 북위 36도 54분 48.32초, 동경 126도 15분 04.70초</p>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p>번화박골 서단(북위 36도 27분 14.52초, 동경 126도 29분 12.63초)에서 월도 동단(북위 36도 24분 36.54초, 동경 126도 28분 10.64초),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을 거쳐 북위 36도 19분 08.57초, 동경 126도 26분 51.65초의 지점과 보령시 신혹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및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을 거쳐 오천국교 서단(북위 36도 26분 17.53초, 동경 126도 31분 00.62초)까지 해안선과 해독동 동단(북위 36도 26분 24.53초, 동경 126도 30분 44.63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33.09초, 동경 126도 39분 47.61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 서측 끝단(북위 35도 59분 7.81초, 동경 126도 43분 42.68초) 소치곶을 연결한 선과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0.35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31분 30.57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p>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지점에서 아래 "가"부터 "바"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사"부터 "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가.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p> <p>나.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p> <p>다.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p> <p>라.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 46분 55.20초, 동경 126도 20분 19.73초</p> <p>마.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p> <p>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p>

완도항	전라남도 완도군	<p>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p> <p>아.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p> <p>자.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p> <p>신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 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 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여수항	전라남도 여수시	<p>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및 순천시	<p>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에서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및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 44.1초, 동경 127도 41분 58.8초 및 북위 34도 55분 41.9초, 동경 127도 42분 15.1초), 광양시 초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하동항	경상남도 하동군	<p>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 56분 25초, 동경 127도 47분 30초)에서 오동</p>

	금성면	도 남단(북위 34도 56분 18초, 동경 127도 47분 20초),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 54분 50초, 동경 127도 48분 57초), 농섬 서단(북위 34도 55분 55초, 동경 127도 49분 31초), 대도 북단(북위 34도 56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54초), 광도 서북단(북위 34도 56분 31초, 동경 127도 50분 16초),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 57분 01초, 동경 127도 50분 4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및 고성군	사천시 대방동 남방 지점(북위 34도 55분 45.17초, 동경 128도 03분 19.18초)에서 장구도 북단, 신수도 북단, 추도 북단, 신수도 최동단 돌출부(북위 34도 53분 51.18초, 동경 128도 05분 03.17초), 삼천포외항 방파제 서단(북위 34도 54분 00.18초, 동경 128도 06분 09.17초)과 외항 방파제 동단(북위 34도 54분 10.18초, 동경 128도 06분 55.16초) 및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북위 34도 54분 16.18초, 동경 128도 07분 04.16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통영항	경상남도 통영시	나부동산 동단(북위 34도 49분 29.78초, 동경 128도 23분 31.27초)과 해말당단 서단(북위 34도 49분 50.81초, 동경 128도 23분 32.13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및 전송말(북위 34도 49분 34.22초, 동경 128도 26분 29.07초)에서 매일봉(북위 34도 50분 42.21초, 동경 128도 26분 53.06초) 동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장승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호엄산 202미터 산정과 동북 방향 북위 34도 51분 48.21초, 동경 128도 44분 07.9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옥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리 북위 34도 53분 29.20초, 동경 128도 43분 57.97초 지점과 팔량포 북위 34도

고현항	경상남도 거제시	54분 08.19초, 동경 128도 43분 01.9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촌돌단(북위 34도 55분 09.19초, 동경 128도 36분 32.01초 지점)에서 열너봉 삼각점(△)(북위 34도 56분 37.17초, 동경 128도 35분 17.01초 지점)과 사두도 북단(북위 34도 54분 54.18초, 동경 128도 33분 50.02초) 지점 및 사곡곶(북위 34도 54분 25.19초, 동경 128도 34분 14.02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마산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상대말(북위 35도 08분 36.10초, 동경 128도 35분 51.01초)과 창원시 진해구 동도(북위 35도 08분 54.09초, 동경 128도 36분 36.00초)를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진해항	경상남도 창원시	고출산 산정(북위 35도 07분 39.10초, 동경 128도 40분 16.98초)에서 마당서(북위 35도 06분 22.11초, 동경 128도 40분 48.98초) 및 대일산 서단(북위 35도 06분 12.11초, 동경 128도 41분 16.98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49.5분) 지점,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지점,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및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각 목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가.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

		<p>점에서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나. 선가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375-16번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내) 기부(基部)로부터 정서쪽으로 136미터 떨어진 해상점을 중심으로 하여 건너편산(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68번지) 정점을 연결하는 일직선상에 있는 육지부와 만나는 지점 안의 해면</p> <p>다.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50.00초, 동경 128도 48분 33.40초)에서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27.00초, 동경 128도 48분 17.60초)와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울산항</p>	<p>울산광역시</p>	<p>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북위 35도 27분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06.04초, 동경 129도 24분 52.37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36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06.00초와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p>	
<p>포항항</p>	<p>경상북도 포항시</p>	<p>용한리 동단(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4분 58.71초)에서 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거쳐 술미 북위 36도 01분 23.76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p>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p>선 안의 해면</p> <p>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p>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동해·북호항	강원도 동해시	<p>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와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와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3.74초와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3.35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p>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속초항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 12분 47.84초, 동경 128도 36분 00.88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그은 선 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 11분 35.35초, 동경 128도 36분 07.39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제주항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지점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서귀포항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삼해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에서 북위 33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강정항 동방파제 단부 북위 33도 13분 37.68초, 동경 126도 28분 41.51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29.66초, 동경 126도 28분 46.4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8.93초, 동경 126도 28분 59.3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9.34초, 동경 126도 29분 41.00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0.90초, 동경 126도 29분 38.8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7.67초, 동경 126도 29분 30.55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9.10초, 동경 126도 29분 26.84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2.57초, 동경 126도 29분 26.9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2. 연안항

항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용기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위 37도 57분 26.86초, 동경 124도 44분 46.16초(용기원산 동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56분 45.87초, 동경 124도 44분 06.16초 지점과 북위 37도 57분 10.86초, 동경 124도 43분 20.17초(사곶해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연평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동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14.27초, 동경 125도 42분 57.26초 지점, 북위 37도 39분 09.95초, 동경 125도 42분 43.6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대천항	충청남도 보령시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과 신희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44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상왕등도항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북측 오끼바위 북위 35도 39분 55.06초, 동경 126도 06분 43.59초 지점에서	

송공항	<p>위도면 상왕동리</p> <p>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p>	<p>북위 35도 39분 26.68초, 동경 126도 09분 00.95초 지점, 북위 35도 39분 21.37초, 동경 126도 06분 38.3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40.76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25.7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0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4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홍도항	<p>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p>	<p>북위 34도 40분 29.22초, 동경 125도 11분 36.09초 지점과 북위 34도 40분 54.22초, 동경 125도 12분 00.0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흑산도항	<p>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p>	<p>남방파제 기점에서 외영산도 동단, 내영산도 최북단을 거쳐 읍동 북동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가거항리항	<p>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p>	<p>북위 34도 04분 52.21초, 동경 125도 05분 38.39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04분 30.94초, 동경 125도 05분 07.8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진도항	<p>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p>	<p>북위 34도 22분 42.36초, 동경 126도 07분 32.80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1분 58.36초, 동경 126도 07분 27.80초 지점, 북위 34도 21분 56.36초, 동경 126도 07분 44.80초 지점, 북위 34도 22분 09.86초, 동경 126도 07분 53.80초 지점 및 북위 34도 22분 03.36초, 동경 126도 08분 07.8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땅끝항	<p>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p>	<p>북위 34도 17분 46.10초, 동경 126도 31분 41.02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7분 46.19초, 동경 126도 32분 04.19초 지점, 북위 34도 18</p>

화흥포항	전라남도 완도군	<p>분 07.87초, 동경 126도 32분 04.0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p>북위 34도 19분 01.39초, 동경 126도 40분 09.63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8분 44.39초, 동경 126도 39분 38.64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00.40초, 동경 126도 40분 13.63초 지점 및 북위 34도 18분 15.40초, 동경 126도 40분 43.6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신마항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p>북위 34도 26분 56.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 및 북위 34도 26분 57.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녹동신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p>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2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거문도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p>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p>
나로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p>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p>
국도항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p>북위 34도 32분 56.45초, 동경 128도 26분 45.59초 지점을 기점으로 북위 34도 33분 07.86초, 동경 128도 26분 31.64초 지점, 북위 34도 32분 48.61초, 동경 128도 26분 08.64초 지점, 북위 34도 32분 38.04초, 동경 128도 26</p>

중화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분 21.56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4도 47분 33.64초, 동경 128도 22분 53.64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46분 47.54초, 동경 128도 22분 50.13초 지점 및 북위 34도 46분 47.64초, 동경 128도 23분 08.6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산남항	부산광역시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구룡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사라말과 병포리 북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구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강구교 북단의 북위 36도 21분 26.2초, 동경 129도 22분 53.7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31.6초, 동경 129도 22분 56.8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50.1초, 동경 129도 23분 38.5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50.1초, 동경 129도 23분 47.1초 지점, 북위 36도 20분 38.9초, 동경 129도 23분 46.7초 지점, 북위 36도 20분 39.0초, 동경 129도 23분 10.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후포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동방파제 기점으로부터 북위 36도 40분 10.76초, 동경 129도 27분 25.48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그 점에서 73도로 북서쪽 육지를 향하여 그은 선 안의 해면
울릉항	경상북도 울릉군	가두봉 남단에서 살구남 동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면
주문진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동단에서 정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추자항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 대서리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7분 57.76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8분 25.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5.53초, 동경 126도 18분 32.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29.53초, 동경 126도 18분 06.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과 하추자도 예초리 북위 33도 57분 21.53초, 동경 126도 19분 57.75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33.53초, 동경 126도 19분 43.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1.53초, 동경 126도 19분 33.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06.53초, 동경 126도 19분 30.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애월항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서방파제 호안 기점으로부터 북위 33도 27분 50.62초, 동경 126도 19분 21.59초의 지점과 북위 33도 28분 7.33초, 동경 126도 19분 21.7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13.11초, 동경 126도 19분 36.92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8.01초, 동경 126도 19분 54.0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7.71초, 동경 126도 19분 53.94초 지점 및 북위 33도 28분 54.76초, 동경 126도 19분 51.88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한림항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선과 용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한림항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화순항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전면(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에서 북위 33도 13분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34.76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20분 07.76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6.82초, 동경 126도 20분 12.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성산포항	제주특별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28분 53.73초,

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지점과 북위 33도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의 지점 및 동방파제 기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갑문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8.2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항 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목호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4.9.24.>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명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연안항 (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흥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홍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9. 4.>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제18조제2항 관련)

1. 부두별 귀속토지

일반 부두		컨테이너 부두	
소형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	대형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이상)	피더 부두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 300미터	안벽으로부터 300미터 ~ 500미터	안벽으로부터 500미터 ~ 800미터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 용지

비 고

1. 제1호의 안벽은 그 안벽의 수역(水域) 측 끝단을 기준으로 한다.
2.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피더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3.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의 크기, 부두의 용도, 화물의 종류, 입지여건, 부두에 설치되는 하역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업 전용 목적의 토지
 - 다.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래 물동량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항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9. 4.>

시설장비의 범위 (제23조 관련)

1. 갑문본체: 상·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배수설비: 취수·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를 포함한다.
9.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10. 야드 채시(Yard Chassis)
11.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12. 스택어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13.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4.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한다.
15.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16. 로딩 암>Loading Arm)
17.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18.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14.9.24.>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의 실시 시기(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항만시설(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긴급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정밀점검

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항만시설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가) 최초 정밀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나)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가) 최초 정밀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나)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삭제 <2015.8.3.>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15.10.29.>

생계지원금 산정 기준 (제72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종류	산정 기준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p>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준에 따른 기준값</p> <p>※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지급대상자</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td> <td>$1 - [(180 - \text{근속기간}) \times 4/100 \times 1/12]$</td> </tr> <tr> <td>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td> <td>1</td> </tr> </tbody> </table> <p>※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지급대상자</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td> <td>정년 잔여기간 × 1/2</td> </tr> <tr> <td>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td> <td>$[60 + (\text{정년 잔여기간} - 60) \times 1/2] \times 1/2$</td> </tr> <tr> <td>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td> <td>45</td> </tr> </tbody> </table> <p>※ 위의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p>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	$1 - [(180 - \text{근속기간}) \times 4/100 \times 1/12]$	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	1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	정년 잔여기간 × 1/2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	$[60 + (\text{정년 잔여기간} - 60) \times 1/2] \times 1/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	45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	$1 - [(180 - \text{근속기간}) \times 4/100 \times 1/12]$																	
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	1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	정년 잔여기간 × 1/2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	$[60 + (\text{정년 잔여기간} - 60) \times 1/2] \times 1/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	45																	
	작업장소별위로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7년 미만</th> <th>7년 이상 9년 미만</th> <th>9년 이상 11년 미만</th> <th>11년 이상 13년 미만</th> <th>13년 이상 15년 미만</th> <th>15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개월</td> <td>5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6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7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8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9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10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11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r> </tbody> </table>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전환배치자	작업장소별위로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7년 미만</th> <th>7년 이상 9년 미만</th> <th>9년 이상 11년 미만</th> <th>11년 이상 13년 미만</th> <th>13년 이상 15년 미만</th> <th>15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개월</td> <td>5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6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7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8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9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10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d>11개월 분의 기준임금</td> </tr> </tbody> </table>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교육훈련비	대체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의 비용 지원																
휴업임금보전비	<p>퇴직 후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임금 × 0.7</p> <p>※ 퇴직 후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p>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하기 전 1년 전의 임금으로서 연속된 3개월의 임금총액 중 최대의 값을 가지는 3개월 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생계안정지원금을 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6.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	법 제101조제1항제2호	200		

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3호	100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27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4호의2	200			
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4호의3	200			
사.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5호	200			
아.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5호의2	50	70	100	
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6호	50	70	10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	법 제101조제1항제7호	50	70	100	

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가. 법 제7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8호	50	70	100
다. 법 제75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9호	20	30	50
파. 법 제7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0호	100	150	2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1호	50	70	100